#### [서식 예] 양수금청구의 소(화재보험금청구채권의 양수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◇◇◇ 전화・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양수금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소외 ◆◆◆는 20○○. ○. ○. 보험회사인 피고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점포 내 상품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경우 보험금 5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물품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○○. ○. ○○. 19:30경 위 점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내 상품들이 전부 소실되어 소외 ◆◆◆는 피고에 대하여 금 50,000,000원의 화재보험금청구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
- 2. 그런데 소외 ◈◆◈는 원고에 대하여 금 50,000,000원의 물품대금채무가 항공 그 변제의 방법으로 20○○. ○○. ○. 원고에게 위 보험금청구채권을 양도 장고 같은 날 소외 ◈◆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며, 위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.
- 3.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	채권양도양수계약서
1. 갑 제2호증	채권양도양수통지서
1. 갑 제3호증	우편물배달증명서
1. 갑 제4호증	보험증권

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	각 1통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	1통
1. 소장부본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 할 법 원	<b>※</b>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<b>^^^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·	_ ,	
비 용 불 복 절 차		적용대상사건	아래(2)참조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및 기 간	·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 말한다 할 것이고, 채권양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 '확정일자'란 증서에 대하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'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취득한다(대법원 2010.5.5.	나 2주 이내(1 양도인과 신 채권 부터 후자에게로 여 도에 의하여 채권 (대법원 2002. 4. 채무자에게 통지하 못하고, 이 통지 외의 제3자에게 여 그 작성한 일 일자를 말하며 당 기고, 지명채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한 경우에는 그 일 지분권자로부터	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 [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적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 6. 선고 2001다59033 판결). 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의 수 있는 중서에 의대항할 수 없다(민법 제450조).여기서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중서에 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대한 편결) 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
기 타	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경일자에 해당한다고 봄(** ·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두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(**)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에게 채무변제에 '갈음하이 없는 한 채권(**) 당도당시 양도대상인 채로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로	계약서에 대한 민대법원 2010. 5.13 '변제와 관련하여를 위한 담보 또' 같음한 것으로 들어 소멸한다고 볼 그 범위 내에서 여'다른 채권을 양요건을 갖추어 대는 양수한 채권의 아니다.이 경우 다면의 존재에 대해서 등 특별한 사정이	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볼 것은 아니어서,그 경우 채권양도만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 채무자가 면책된다. 채무자가 채권자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 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면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  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